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2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 김석기 · 인요한 · 구자근

최형두 · 엄태영 · 서천호

이철규 • 김장겸 • 박성민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화 되고 있어 국 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찰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조사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나 신병확보 수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소년이 경찰의 조사와 동행을 거부할 경우 조치할 수단이 없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열거된 소년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사건에 관한 소환과 조사, 압수, 수색, 검증, 촉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이 조사·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 및 임시조치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여 신병보호 등을 통해 소년 본인의 보호와 추가적인 비

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찰관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사건에 관 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 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에게 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 다. 경찰관이 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 형사사건절차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 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 라. 경찰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의 조사, 송치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관서에서 6시간 이내에 신병보호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경찰관의 조사 등) ① 경찰관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은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본인이나 보호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에게 동 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4조제1항에 열거된 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압수, 수색, 검증,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찰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의 조사, 송치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 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에서 6시간 이내 신병보

호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경찰관의 조사 등) ① 경찰관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 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사건에
<u><신 설></u>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 한 경우 경찰관은 소년, 보호 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여 질
	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이유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에게 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4조제1항에 열거된 소년 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압수, 수색, 검 증,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
제14조(긴급동행영장) <u>소년부 판</u> 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 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u>다.</u> 제14조(긴급동행영장)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인정하면제13조제1항에따른소환없이동행영장을발부할수있다.

<u><신</u>설>

② 경찰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의 조사, 송치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년부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에서 6시간 이내 신병보호 등조치를 할 수 있다.